

(參 照)

##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6-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3.

제 출 · 자 : 달서구청장  
(기획감사실)

### 1. 제안이유

- 성서공단과 월배준공업지역등에 소재한 관내 중소기업체가 기업활동 중 법적분쟁이 발생했을때 이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
-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따로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구 고문변호사를 현재 1인에게 약간명으로 개정(안 제2조제1항)
- 2인이상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따로 위촉(안 제2조제2항)
-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제1항제5호)

3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##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대구광역시 달서구와”를 “달서구정과 지역발전에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1인”을 “약간명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따로 위촉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위촉)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<u>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1조(목적) ..... <u>달서구정과 지역 발전에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2조(위촉) 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u>약간명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<u>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분야 별로 따로 위촉한다.</u></p>
<p>제3조(직무) ①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사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